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4. 5 선고 2023가단523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생각

담당변호사 정진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8.

판 결 선 고 2024. 4. 5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건물, D호 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22. 10. 27. 피고와 주문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,000만 원, 차임 월 540만 원, 임대차기간 2022. 11. 1.부터 2024. 10. 31.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, 피고는 2023년 1월분 차임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, 원고는 2023년 6월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광열